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9-40호
2019. 6. 21.(금)

차 례

조 례(15)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357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1358호) ...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조례 제1359호)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조례 제1360호)2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361호)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조례 제1362호) ...3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조례 제1363호)3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364호)44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조례 제1365호)4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66호) ...54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67호) ...5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68호)5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69호) ...60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370호)6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조례 제1371호)66

고 시(3)

- 하천 점용 허가 고시(고시 제2019-79호)71
-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승인 고시(고시 제2019-80호)72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9-82호)77

공 고(8)

- 대덕구 읍내동 녹지 내 ‘대전군민운동지 기미년삼일대한독립만세비 및 기념비 건립기’ 철거 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9-532호)78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571호)79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572호)81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573호)86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574호)92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575호)94
- 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 결정·공시(공고 제2019-583호)96
- 등록사항정정(경계,면적)대상토지 공고(공고 제2019-584호)97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576호) ...98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5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
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
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
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직권남용금지)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사례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 (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 (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국외활동)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회의출석) 의원은 청가계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국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겸직 사실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③ 의원은 제2항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한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원등록시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대덕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

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겸직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제5조제5항 및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법 제3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위배되는 경우
5. 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경우

6.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의원부터 적용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국민요구가 확대되고 있어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규정 강화 및 통제체계 구축, 자치단체와의 영리 거래 금지 적극 운영, 징계규정 구체화 및 명확화 등을 통해 대덕구의회의원의 윤리규범을 보다 강화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규정을 강화하고 통제체계를 구축함
(제5조 및 제8조).
- 자치단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규정을 강화함(제7조).
- 징계규정을 구체화하고 명확화 함(제9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함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5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
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
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

업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 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세부적인 행정 지원은 토론회 등의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토론회 등의 개최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한다.

③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소속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덕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대덕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토론회 등" 을 대덕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구민의견청취 행위로 정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 공청회와 명확히 구별함(제2조).
-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을 규정함(제3조).
-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신청 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마련함(제4조).
-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회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명확히 구분함(제5조).
-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이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토록 함(제6조 및 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행복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5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중심의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이란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민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주민 행복 증진의 목표 및 추진 전략
3.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에 민간기

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행복지수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

② 구청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수치화한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 행복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 방법과 절차·대상·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사회·경제·환경 등 구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구 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그 밖에 행복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덕구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관계공무원 등 행복 또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복정책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행복 증진 교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주민과 공무원,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복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 또는 장려할 수 있다.

제15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의 개발·조사·측정과 제14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행복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중심의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행복지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8조).
- 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행복 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14조).
-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15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16조).
-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1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6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생률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출생 장려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신·출생·양육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4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등 신생아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출생축하금품”이란 출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가 출생한 가정의 모 또는 부에게 지원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6.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건전한 결혼과 출생을 장려하고 양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협조) 구민은 출생률 저하에 따른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구청장이 시행하는 출생 장려 및 양육 지원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출생 장려 및 양육 지원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저출생 대응 시책 발굴) 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시책 중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관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저출생 대응 시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미혼남녀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생아 또는 영유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의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신생아 또는 영유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신생아 또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제8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저출생 위기극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생 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품 지원
2. 신생아와 영유아의 양육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3.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및 주차료 등 감면혜택, 교통편의 제공, 교육 지원 등 우대 시책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 지원 조건에 위배될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지원의 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시정지시, 지원중지 등을 결정하고 제8조 각 호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하여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약 내용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기관·단체·기업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저출생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생아 및 영유아의 임신·출생·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
2. 지역 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사업
3. 모자보건 증진사업
4. 미혼남녀의 결혼장려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출생 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및 기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출생 장려 및 양육 관련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중복지원 제외)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체감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전한 결혼문화 장려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출생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
(제3조 및 제4조).
- 저출생 대응 시책의 발굴, 대상,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1조 및 제12조).
- 시책 추진 유공자의 포상에 대하여 규정함(제1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6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① 대전광역시 대덕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발굴·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내 소득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제3조).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이용활성화와 지정에 따른 지원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6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

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행아동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해당 사항과 관련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대덕구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가정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건전한 사회 환경과 적절한 부모역할 등이 충족되지 못하는 방임 등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아동학대 금지·신고의무·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사업비지원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6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
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대전

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 내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 공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덕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때에는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대덕구민은 대덕구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대덕구 또는 대덕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대덕구 또는 대덕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대덕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 · 장소
2. 행사주최 · 주관 · 후원
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 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8. 구청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덕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

다.

제11조(안전관리에 대한 권고) ① 구청장은 대덕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이 대덕구 내에서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최자에 대한 권고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우리 구에서 열리는 지역축제 및 공연 등 옥외행사 등에서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재난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6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운영
4. 필요한 자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전문업체·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및 별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 별채 대상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별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험수목 처리대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목의 처리는 관리 주체의 재산세 납부 금액과 소득세 납부 금액에 따라 정하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대덕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소유자 등의 동의)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의 제9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반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 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생활주변에 산재한 거목 및 고사목이 태풍 등 자연재해시 주민의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함(제1조).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위험수목 처리반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6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

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의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알코올 오·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및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의 보호)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청소년에게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8조(주민 등의 참여) 주민·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및 반영)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음주청정지역의 지정을 규정함(제4조).
- 청소년 및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주민 및 단체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 연구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및 제1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
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6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국민건강증진
법」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
역 중 절대보호구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이 신설되어 인용된 법령 조항이 제9조제7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5조제1항).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삭제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해당 장소에 대한 관계법령을 변경함(제5조제1항제2호).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6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
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령」 제40조에 규정된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등급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준용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로 변경함(제5조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6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포함된 조문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변경된 제도 시행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예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제5조제2항).
- “장애등급” 을 “장애의 정도” 로 조문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6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구성·운영 할 수 있다”를 “구성·운영 하되, 특정 성별
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별표 2 중 “1~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4
급~6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1~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4급~6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하여 ‘장애 등급’ 을 ‘장애 정도’ 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270호, 2017.12.19.공포, 2019.7.1.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포함된 조례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장애등급 용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별표 2).
 - ⇒ “1급~3급 장애인” 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개정
 - ⇒ “4급~6급 장애인” 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으로 개정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의 장애등급 용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별표 3).
 - ⇒ “1급~3급 장애인” 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개정
 - ⇒ “4급~6급 장애인” 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으로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7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종량제봉투의 감면)”을“(종량제봉투의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1급 장애인 세대”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로 한다.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기후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

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별표 1의 잡쓰레기란 다음에 폐소화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폐소화기 (가압식 소화기 제외)	4.6kg 이하	3,000
	4.6kg 초과 20kg 미만	5,000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감면 대상자의 범위 조정 및 대형폐기물 항목 추가 등 개정된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9조의 제목을 변경함(제29조).
- 종량제봉투 감면 대상자 용어 변경 및 범위를 조정함
(제29조제1항제4호).
- 대덕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제42조제3항).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항목을 추가함(별표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37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개인이 건축주인 건축물

제5조(공공건물의 인증취득 의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가 신축·증축,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물은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대덕구가 공공건물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취득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의 시설주 또는 인증수수료 납부자에게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증취득 신청지원)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서, 인증수수료 납부영수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취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에 대한 교육 ·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물의 목록을 매년 1회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건물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누구나 공공건물 및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적용대상 및 인증취득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인증취득지원 및 신청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사후관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하천 점용 허가

1. 하 천 명 : 지방하천(용호천)
2. 피허가자 : 대덕구청장(안전총괄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20]
3. 점용위치 : 용호동 427번지
4. 점용면적 : 1.2m²
5. 점용목적 : 재난취약지역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에 따른 공작물
(폴대) 설치
6. 점용기간 : 2019. 6. 17. ~ 영구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승인 고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결산개황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위촉한 이삼남 결산검사 대표위원 외 3명의 위원에게 2019. 4. 3일부터 4. 22일까지 20일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덕구의회에 승인 신청하여 2019. 6. 18.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2.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액		418,952,292,100	405,835,496,700	13,116,795,400
결산액	세입	424,710,287,104	411,617,304,633	13,092,982,471
	세출	357,423,549,683	353,683,803,583	3,739,746,100
결산상잉여금	계	67,286,737,421	57,933,501,050	9,353,236,371
	명시이월	24,165,276,300	19,085,804,780	5,079,471,520
	사고이월	4,826,096,360	2,121,000,380	2,705,095,980
	계속비이월	0	0	0
	보조금반납금	4,676,366,411	4,588,388,211	87,978,200
	순세계잉여금	33,618,998,350	32,138,307,679	1,480,690,671

3. 일반회계결산

가)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계	405,835,496,700	418,403,986,038	411,617,304,633	1,049,919,172	5,736,762,233
지방세수입	42,150,000,000	44,760,640,370	44,048,127,240	105,567,310	606,945,820
세외수입	17,387,803,000	23,720,567,462	17,646,399,187	944,351,862	5,129,816,413
지방교부세	8,926,000,000	12,581,579,760	12,581,579,760	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4,359,891,000	54,359,809,000	54,359,809,000	0	0
보조금	228,087,423,000	228,047,279,520	228,047,279,52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4,924,379,700	54,934,109,926	54,934,109,926	0	0

나)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405,835,496,700	353,683,803,583	21,206,805,160	4,588,388,211	26,356,499,746
일반공공행정	15,851,032,000	13,720,442,840	50,000,000	13,466,875	2,067,122,285
공공질서및안전	1,347,649,000	1,228,873,230	0	3,138,440	115,637,330
교육	6,605,337,000	6,322,741,644	155,555,000	27,407,710	99,632,646
문화및관광	7,410,128,380	6,826,933,332	289,016,700	36,736,420	257,441,928
환경보호	11,796,043,580	11,409,049,680	53,399,000	28,870,890	304,724,010
사회복지	188,429,676,000	181,983,847,389	2,142,448,000	3,406,304,905	897,075,706
보건	8,561,539,000	7,410,444,028	286,325,600	571,116,360	293,653,012
농림해양수산	7,375,558,900	6,643,335,640	414,933,230	139,776,730	177,513,300
산업·중소기업	2,240,739,000	580,195,520	771,946,680	1,865,500	886,731,300
수송및교통	37,990,396,820	34,707,744,360	2,231,570,890	190,379,289	860,702,281
국토및지역개발	40,357,649,020	24,684,624,920	14,811,610,060	154,735,732	706,678,308
예비비	16,409,614,000	0	0	0	16,409,614,000
기타	61,460,134,000	58,165,571,000	0	14,589,360	3,279,973,640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4. 특별회계 결산

가)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계	13,116,795,400	16,057,168,006	13,092,982,471	334,336,240	2,629,849,29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4,000,000	4,000,000	4,000,000	0	0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681,674,000	1,199,058,560	737,206,679	0	461,851,881
수 질 개 선 특별회계	1,576,429,000	1,572,009,500	1,572,009,500	0	0
지 하 수 관 리 특별회계	1,054,437,000	1,096,555,040	1,047,878,905	0	48,676,135
주 차 장 특별회계	9,800,255,400	12,185,544,906	9,731,887,387	334,336,240	2,119,321,279

나)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13,116,795,400	3,739,746,100	7,784,567,500	87,978,200	1,504,503,6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4,000,000	3,650,000	0	350,000	0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681,674,000	673,797,320	0	7,873,780	2,900
수 질 개 선 특별회계	1,576,429,000	1,482,457,570	6,834,880	51,821,250	35,315,300
지 하 수 관 리 특별회계	1,054,437,000	60,723,000	0	0	993,714,000
주 차 장 특별회계	9,800,255,400	1,519,118,210	7,777,732,620	27,933,170	475,471,400

5. 기금현황

(단위 : 원)

기 금 명	설치 연도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e=a+b$
			계 [㉢] $b=c-d$	조성액 [㉣] c	사용액 [㉤] d	
계		21,773,339,307	704,450,293	2,151,405,133	1,446,954,840	22,477,789,600
통합관리기금	2006	14,439,617,253	628,488,871	675,369,871	46,881,000	15,068,106,124
		(198,049,390)	(△76,828,550)	(121,220,840)	(198,049,390)	(121,220,840)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991	173,032,148	2,616,590	2,616,590	0	175,648,738
자활기금	2007	2,527,051,945	48,567,079	53,567,079	5,000,000	2,575,619,024
노인복지기금	1996	646,996,754	2,658,950	9,722,950	7,064,000	649,655,704
여성복지기금	1996	664,599,887	△3,957,520	9,899,480	13,857,000	660,642,367
녹지기금	1993	1,664,540,045	26,282,772	26,282,772	0	1,690,822,817
재난관리기금	1998	2,811,297,060	416,359,350	560,211,800	143,852,450	3,227,656,410
식품진흥기금	2001	456,744,479	49,231,182	108,363,182	59,132,000	505,975,661
주차장 조성기금	2005	4,502,928,719	△348,926,890	651,073,110	1,000,000,000	4,154,001,829
환경보전기금	2008	550,985,290	△11,861,050	8,138,950	20,000,000	539,124,240
청사건립기금	2013	7,577,113,590	600,308,380	600,308,380	0	8,177,421,970

※ “계”는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과의 중복액(통합관리기금예탁금)을 제외한 순계규모이며, 중복액을 제외한 통합관리기금 순규모는 ()안에 표기하였음.

6. 채권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합 계	2,933,116,500	150,061,350	2,719,012,960	-	-	-	214,103,540	150,061,350
융 자 금 채 권	소 계	2,933,116,500	150,061,350	2,719,012,960	-	-	214,103,540	150,061,350
	공무원학자대여금	2,719,012,960	-	2,719,012,960	-	-	-	-
	기타융자금	214,103,540	150,061,350	-	-	-	-	214,103,540

7. 채무결산

가) 채무현황

(단위 : 원)

회계	종 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A-B)	발 생 액 (A)	소 멸 액(B)		
“ 해 당 없 음 ”							

나) 채무부담행위

(단위 : 원)

과 목				승 인 일 자	계 약 일 자	채무부담 행위승인액	채무부담 행 위 액	상 환 조 건	채무부담 행위사유
조 직	부 문	세부 사업	편성 목						
“ 해 당 없 음 ”									

8. 주민부담 지방세 부담액

(단위 : 원/명)

지 방 세	인 구	주민1인당 지방세액
44,048,127,240	181,991	242,035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오정동 233-54	한남로67번길 29	2019. 6. 21.	건물신축	한남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석봉동 189-18, -29, -30, -34, -36	석봉로 31	2019. 6. 21.	건물신축	행정구역명(석봉동)을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덕구 읍내동 녹지 내 ‘대전군민운동지 기미년삼일대한독립만세비 및 기념비 건립기’ 철거 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130-5번지 일원(녹지)에 설치된 미확인 독립운동가의 기념비와 관련하여 비문 내용이 역사적,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설치자에게 철거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송달내용 : 대덕구 읍내동 녹지 내 대전군민운동지 기미년삼일대한독립만세 기념비 사진 철거명령 및 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2019. 6. 21. ~ 7. 5.(14일간)
3. 공고대상 : 대전군민운동지 기미년삼일대한독립만세 비 및 기념비 건립기 / 대덕구 읍내동 130-5번지(녹지) 내
4. 설 치 자 : 대전애국지사숭모회
5. 공고 및 게시장소 : 관보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6. 계고내용
 - 상기 시설물에 대하여 사진철거 및 대집행 계고서를 통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의무자의 송달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바, 2019. 7. 5.까지 사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대덕구 공원녹지과(☎042-608-5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로부터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덕암동 7-3 번지 앞	도시가스관 철거	덕암동 7-3 앞	63	아스팔트	2.0	'19.6. ~ '19.7. (착공일로부터 20일)	4.0 (착공일로부터 20일)	-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사 진 대 지(제2019-27호)

굴착위치

덕암동 7-3번지 앞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 지로부터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연축동 102번지 (1) 앞	도시가스관 철거	연축동 102(1) 앞	300	투수콘	2.0	'19.6. ~ '19.7. (착공일로부터 20일)	6.0 (착공일로부터 20일)	-
2	연축동 102번지 (2) 앞	도시가스관 철거	연축동 102(2) 앞	300	소형 고압블럭	2.0	'19.6. ~ '19.7. (착공일로부터 20일)	6.0 (착공일로부터 20일)	-
3	연축동 199 번지 앞	도시가스관 철거	연축동 199 앞	300	투스콘	2.0	'19.6. ~ '19.7. (착공일로부터 20일)	6.0 (착공일로부터 20일)	
4	연축동 200 번지 앞	도시가스관 철거	연축동 200 앞	300	아스팔트	2.0	'19.6. ~ '19.7. (착공일로부터 20일)	6.0 (착공일로부터 20일)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사 진 대 지(제2019-28호)

굴착위치	연축동 102번지(1) 앞	1번
------	----------------	----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사 진 대 지(제2019-28호)

골착위치	연축동 102번지(2) 앞	2번
------	----------------	----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사 진 대 지(제2019-28호)

굴착위치	연축동 199번지 앞	3번
------	-------------	----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사 진 대 지(제2019-28호)

굴착위치	연축동 200번지 앞	4번
------	-------------	----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 지로부터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신대동 233-1 번지 앞	도시가스관 매설	신대동 233-1 앞	63	아스팔트	4.0	'19.6. ~ '1 9.7. (착공일로부 터 20일)	7.2 (착공일로 부터20일)	0.38 (허가일로 부터10년)
				63	콘크리트	2.0			
2	신탄진동 171- 23번지 앞	도시가스관 매설	신탄진동 17 1-23 앞	63	아스팔트	5.0	'19.6. ~ '1 9.7. (착공일로부 터 20일)	6.0 (착공일로 부터20일)	0.32 (허가일로 부터10년)
3	석봉동 189-34 번지 앞	도시가스관 매설	석봉동 189- 34 앞	225	아스팔트	15.0	'19.6. ~ '1 9.7. (착공일로부 터 20일)	20.4 (착공일로 부터20일)	3.56 (허가일로 부터10년)
				90	아스팔트	2.0			
4	석봉동 313-7 번지 앞	도시가스관 매설	석봉동 313- 7 앞	110	아스팔트	3.0	'19.6. ~ '1 9.7. (착공일로부 터 20일)	20.4 (착공일로 부터20일)	1.78 (허가일로 부터10년)
				110	소형고압블럭	12.0			
				63	소형고압블럭	2.0			
5	비래동 122-22 번지 앞	도시가스관 매설	비래동 122- 22 앞	90	아스팔트	9.0	'19.6. ~ '1 9.7. (착공일로부 터 20일)	14.4 (착공일로 부터20일)	1.0 (허가일로 부터10년)
				63	아스팔트	3.0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사 진 대 지(제2019-29호)

굴착위치	신대동 233-1번지 앞	1번
------	---------------	----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사 진 대 지(제2019-29호)

굴착위치	신탄진동 171-23번지 앞	2번
------	-----------------	----

위 치 도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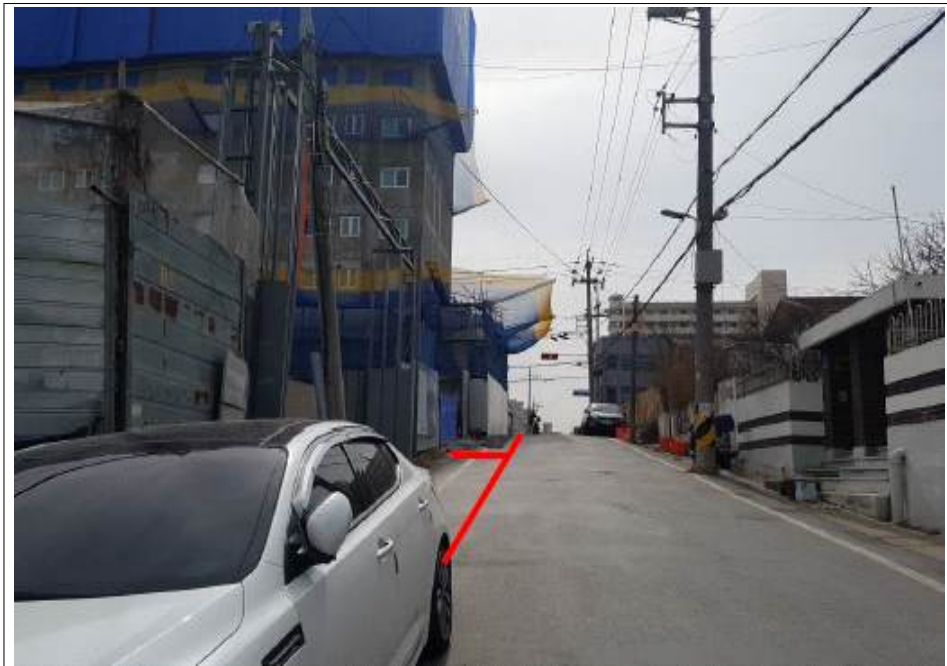
사 진 대 지(제2019-29호)

굴착위치	석봉동 189-34번지 앞	3번
------	----------------	----

위 치 도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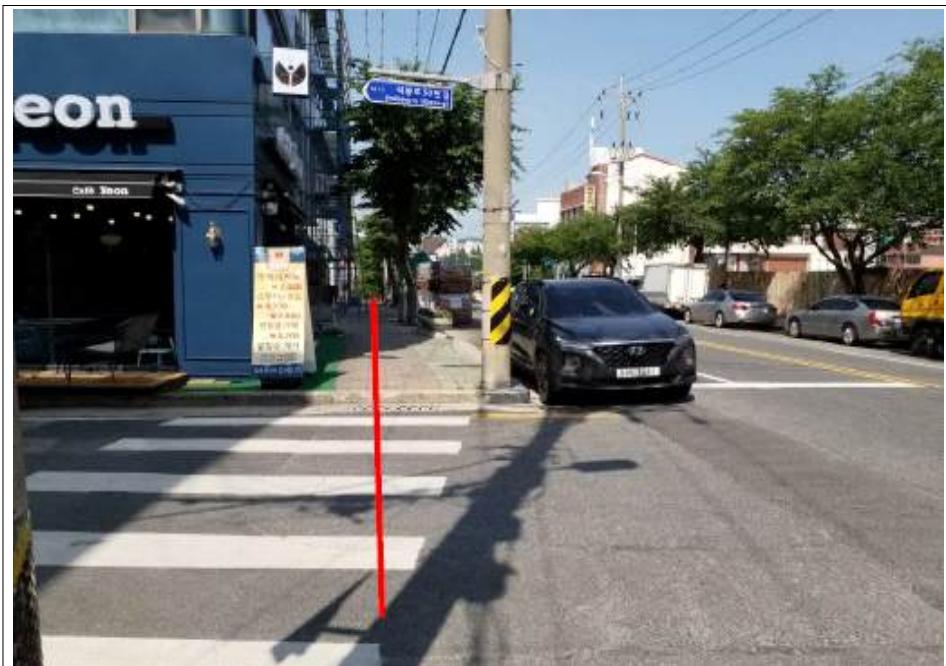
사 진 대 지(제2019-29호)

굴착위치	석봉동 313-7번지 앞	4번
------	---------------	----

위 치 도



현 장 사 진



사 진 대 지(제2019-29호)

골착위치	비래동 122-22번지 앞	5번
------	----------------	----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로부터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오정동 425-10 번지 앞	도시가스관 철거	오정동 425-10 앞	63	아스팔트	2.0	'19.6. ~ '19.7. (착공일로부터 20일)	4.0 (착공일로부터 20일)	-

2019년 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사 진 대 지(제2019-30호)

골착위치

오정동 425-10번지 앞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로부터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영구점용(㎡)
1	오정동 233-54번지 앞	도시가스관 철거	오정동 233-54 앞	63	아스팔트	2.0	'19.6. ~ '19.7. (착공일로부터 20일)	4.0 (착공일로부터 20일)	-

2019년 6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사 진 대 지(제2019-31호)

골착위치

오정동 233-54번지 앞

위 치 도



현 장 사 진



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2019.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중 조정된 주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대상주택 : 대덕구 송촌동 246-26번지(송촌남로33번길 17)
- 공시장소 : 대덕구 공보, 대덕구 홈페이지
- 내 용 : 2019. 4. 30일자로 결정·공시한 2019.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중 이의신청으로 조정된 개별주택가격

(단위:원)

소재지	당초 결정주택가격	조정 결정주택가격	검증결과
대덕구 송촌동 246-26 (송촌남로33번길 17)	117,000,000	115,000,000	하향

등록사항정정(경계, 면적)대상토지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에 따라 아래 토지에 대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하고, 정정할 사항이 정리되기 전까지 지적측량을 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대상 : “등록사항정정(경계, 면적)대상토지”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6. 21. ~ 2019. 07. 07.(15일 이상)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소재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통지(등록)내역	비고
			정정 전	정정 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568-1	하천	215,219	233,679	국 (국토교통부)	(80)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경계 면적

5. 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대덕구청 민원지적과(지적담당 ☎042-608-53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6월 2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안전보험 가입대상(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구민안전보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피해신고 방법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보험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0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총괄과(전화 : 042-608-5352, FAX:042-608-3849, E-Mail : nahs1128@korea.kr)
 -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안전총괄과 담당자 나한수 (전화 : 042-608-535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피해발생일 전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